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한진중공업 창원동 서강아파트 현장
임재봉 차장

1. 목적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4항(건설공사의 안전교육)에 의거 실시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주체가 되는 인원과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보건활동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업무절차



(1)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및 수요파악

▶ 권한 및 책임 : 안전관리자

▶ 주요업무 내용

① 법적 교육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의 대상자/ 실시자 선정

② 현장/협력업체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 파악

(2)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 권한 및 책임 : 안전관리자

▶ 주요업무 내용

교육 종류/대상에 의한 계획수립

(3) 협의체 회의(개선계획 수립)

▶ 권한 및 책임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소장

▶ 주요업무 내용

협의체에서 개선대책 중 안전교육으로 조치가 가능한 시안에 대해 업무분장 협의

(4)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선정

▶ 권한 및 책임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소장

▶ 주요업무 내용

① 교육종류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② 교육대상자에 따른 교육실시자 선정

(5) 안전보건교육 준비

▶ 권한 및 책임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소장

▶ 주요업무 내용

- ① 교육종류/대상에 따른 교육자료 준비
- ② 교육시간 사전통보 및 참여유도
- (6) 안전보건교육 실시
 - ▶ 권한 및 책임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소장
 - ▶ 주요업무 내용
- ① 위험성평가/협의체회의/안전점검 결과를 주 내용으로 교육실시
- ② 공중별 분리 교육 실시
- ③ 위험예지 활동 적극 활용(TBM)
- (7) 기록 및 사후관리
 - ▶ 권한 및 책임 : 안전관리자
 - ▶ 주요업무 내용
- ① 교육 후 교육 실시자는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결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원본을 제출
- ② 안전관리자는 교육 일지 관리/유지

가.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및 수요파악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필요성과 대상자, 실시자를 파악하여 각 계층의 업무분장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방법과 교육주기를 확정/결정한다.

No	교육대상	현장 교육 시간	본사 교육 시간	법적 준수 시간
1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16시간/년	8시간/년	16시간/년
2	협력업체소장 및 관리감독자	16시간/년	8시간/년	16시간/년
3	근로자	24시간/년		2시간/월

(2) 안전관리자는 공사 개설초기 안전보건조직도 구성을 하고 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운영 등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업체소장에게 교육한다.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년간교육 계획) ▶

No	교육과정	교육내용	대상	시간	실시(주관)	대상
1	정기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협의체회의/안전점검사항(해당공정의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전파)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 보호구/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 안전보건에 관한 공지사항 • 비상사태시 행동요령/훈련 	근로자	2시간/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 외부강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현장의 안전보건목표 및 방침 • 현장 안전보건경영예뉴얼/시스템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규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협의체회의/안전점검 사항 • 작업안전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권한(업무분장) • 비상사태시 행동요령 • 산업안전보건법과 협조사항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40분/월 (40분/회 1회/월 12월/년 = 8시간/년)		
2	신규채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현장/공사개요, 공정상황과 위험장소, 안전표지 주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근로자 준수사항 • 개인보호구 사용법 및 지급 • 현장안전활동지침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작업 방법 	근로자	1시간 현장투입전	협력업체 소장	
3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작업과 기계에 관한 사항 • 유사공정 산업재해사례 • 해당 보호구 점검 및 취급사용법 • 근로자의 복장과 보호구 상태 • 비상사태시 행동요령 	근로자	2시간/월 사유발생시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4	직업내용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작업과 기계에 관한 사항 • 유사공정 산업재해사례 • 해당 보호구 점검 및 취급사용법 • 근로자의 복장과 보호구 상태 • 비상사태시 행동요령 	근로자	1시간/년 사유발생시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5	일일교육 (TBM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조회 후 당일 작업에 대비한 위험예지활동 실시(현장에서 팀별 활동) •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사항 • 해당 관리감독자/팀별 조·반장 	근로자	10분/일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건설법 시행령 제 46조 7항
6	외부강사초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련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에 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근로자에게 보급하고자 함 	전 직원 전 근로자	1시간/년	외부강사	

나. 안전보건교육 목표계획 수립

(1)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목표를 고려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세운다.

(2) 안전관리자는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교육대상자와 실시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사유의 교육발생시 업무분장에 의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의 종류("가"항 (1) 참조)는 크게 현장/본사/외부위탁 3가지이며 모든 교육일지와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의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적교육 시간으로 산정한다.

(4) 협력업체 수준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개선대책 수립(협의체 회의)

(1) 안전관리자는 해당 공종별 위험성평가 실시 후 협의체 회의(현장안전메뉴얼, 협의체 회의 운영 지침 참조)를 진행한다.

(2) 안전관리자는 협의체 회의 후 합의 도출된 내용 중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안을 확인하여 각 업무분장 실시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선정

(1) 안전관리자는 "가"항 (3)을 참조하여 대상자와 실시자를 결정하고 교육계획과 법적 교육 사유발생시 업무분장에 의하여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 대상자는 당해 현장에서 작업하거나 일하는 전 근로자이고, 교육 실시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소장으로 한다.

마. 안전보건교육 준비

(1) 교육실시자는 해당 교육사유가 발생시에 신속히 교육일자와 장소를 정해 교육대상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전달한다.

(2) 교육 실시자는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맞춰 사전에 교육 강의자료와 기자재, 음료수 등을 준비하

여 교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교육자료는 금회 위험성평가서나 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 점검표 내용으로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상 제반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안전보건교육 실시

(1) 협력업체 소장이 안전교육 실시시 관리감독자/공무/관리/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참관할 수 있고, 협력업체 요청시 이들이 강사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협의체회의의 실시 주기와 같이 협의체 회의 협의사항 중 안전교육도 이들 주기와 맞물려 시행하도록 한다.

(3)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소장, 외부초빙강사 등이 공종별(협력업체별)로 나눠서 개별교육을 실시하거나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 집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효과적 위험요인 전파를 위해 근로자 정기안전교육(2시간/월)을 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의 주기에 맞춰 협의체회의의 종료 후 1시간/2주 분할 교육을 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은 매일 작업시작전 실시하는 아침조회(위험예지활동(TBM))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당일 안전 주지사항(전날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와 당일 예상되는 문제)과 새로 투입되는 작업/인원/장비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이때 위험예지활동은 필요시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으며, 체조와 병행하거나 안전 전달사항과 작업지시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6) 위험예지활동 중 교육참석자 명단과 사진대지 등 필요한 기록이 유지된다면 법적 교육시간으로 산정한다.(위험예지활동 시간이 법적 교육시간 만큼 누적되어 보고 된다면 법적교육으로 인정)

(7) 외부 안전위탁 교육도 교육참석 명단과 사진

대지 등 필요한 기록이 유지된다면 법적 교육시간으로 산정한다.

(8)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 협력업체소장 주관의 안전교육이 실시 예정인 경우 서로 간섭이 안 되도록 날짜/시간을 협의체회의에서 조정한다.

(9) 교육실시자는 교육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쉽게 교육시킨다.

- ① 금회 실시한 해당 공종의 위험성평가서와 협의가 도출된 협의체회의록의 위험 요인과 개선대책을 교육내용의 골자로 한다.
- ② 수행업무 활동과 관련된 위험의 심각성과 근로자의 책임
- ③ 사고시 대처법과 응급처치 등(비상사태 연락망과 행동요령)
- ④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사고의 결과
- ⑤ 안전보건관련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 ⑥ 해당 공종의 유사 사고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 ⑦ 해당 공종의 사용되는 안전보호구의 사용과 취급요령 및 지급
- ⑧ 해당 공중에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관리 및 방호대책
- ⑨ 해당 공종 작업장의 위험요소 및 현장 상황 전달
- ⑩ 작업장 정리정돈/안전점검의 날 행사, 유공자 포상
- ⑪ 당사/현장의 안전보건목표 및 방침 전달
- (10)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
 - ① 고함실내/밀폐장소/터널안에서의 굴착 또는 터널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맨홀/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②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 ③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 ④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⑤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작업
- ⑥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⑦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 구축물)
- ⑧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암석 굴착작업(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굴착 제외)
- ⑨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 ⑩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⑪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⑫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⑬ 처마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⑭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사. 기록 및 사후관리

(1) 교육 실시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3일 이내에 교육일지상의 결재를 득한 후 원본을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안전관리자는 제출된 교육일지의 교육내용과 교육운영/효과 등을 파악하여 미비한 점은 협의체회의나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하여 전달하고 시정토록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제출된 교육일지를 유지/관리한다.

(4)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특정 안전교육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 양식을 현장메뉴얼에 적용한다.

(5)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협의체회의→개선조치, 근로자교육/전파 등 제반 시스템 운영 사항이 유지되도록 감시하고 Feed-Back 하여 빠른 정착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